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0월 18일, 민형배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2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01. 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5. 01. 16)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421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01. 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
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민형배 의원)

박물관 및 미술관의 균형있는 지역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고르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이 목적입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서울·과천·청주에, 국립민속박물관은 서울·과주에만 설립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만 편중돼 문제입니다.

이에,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균형있게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문화와 예술을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0조제4항 후단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가. 개정안의 요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및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10조제4항 후단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설립과 운영) ① ~ ③ (생략)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0조(설립과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 ----- ----- ----- ----- <u>.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⑤ ~ ⑧ (생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¹⁾는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둘 것을 명시하고, 민속자료의 수집·보존 전시 및 연구를 위해 국립민속박물관을 두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음.
- 이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및 국립현대미술관은 각각 서울을 제외한 소속 지방 박물관 또는 분관을 운영하고 있음.
 - 국립중앙박물관은 서울의 본관을 제외하고 강원권 1관(춘천), 충청권 3관(부여, 공주, 청주), 전남권 4관(광주, 전주, 나주, 익산), 영남권 4관(경주, 진주, 김해, 대구), 제주권 1관(제주)의 총 13개 지방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청권의 국립충주박물관이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설립과 운영) ①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둔다.
② 민속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민속박물관을 둔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다.

2026년에 신규로 개관할 예정임.

- 국립민속박물관의 경우 서울관과 파주관의 수도권 2개관을 운영하고 있고, 2024년에 지방 분관 건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한 바 있음.
- 국립현대미술관은 현재 과천 본관, 서울·덕수궁 분관 및 청주 미술품수장센터까지 4개 관이 운영되고 있고, 대전의 국립 미술품수장보존센터가 2027년 신규로 완공될 예정임.

[지방 박물관·미술관 운영 현황]

구분 (본관)	지방 분관 운영 현황	비고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13개 (경주, 광주, 전주, 대구, 부여, 공주, 진주, 청주, 김해, 제주, 춘천, 나주, 익산)	- 국립충주박물관 신규 개관 (2026년 예정) -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건립 (2027년 예정)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1개 (파주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개 (청주 미술품수장보존센터)	- 분관: 서울관, 덕수궁관 - 대전 미술품수장보존센터 신규 완공(2027년 예정)

○ 전국의 박물관 및 미술관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2024년 기준 전국 박물관 및 미술관의 30% 이상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서는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2024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전국의 박물관 916개관 중 수도권에 설립된 박물관은 295개관(32.2%)이고, 전국의

미술관 288개관 중 수도권에 설립된 미술관은 110개관(61.8%)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지역별 인구 백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를 살펴보면, 지방이 인구가 적어 백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는 많지만, 비수도권은 평균치에 비해 지역별로 문화시설의 분포 편차가 수도권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지역별 인구 백만명당 박물관·미술관 수]

지역	인구(명)	박물관(개)	미술관(개)
서울	9,386,034	14.38	4.69
부산	3,293,362	9.72	2.73
대구	2,374,960	8.00	1.68
인천	2,997,410	10.34	2.34
광주	1,419,237	9.16	9.86
대전	1,442,216	10.40	3.47
울산	1,103,661	9.06	0.91
세종	386,525	15.52	0
경기	13,630,821	9.46	4.33
강원	1,527,807	65.45	13.09
충북	1,593,469	25.73	6.90
충남	2,130,119	30.05	4.69
전북	1,754,757	25.64	11.40
전남	1,804,217	34.92	22.72
경북	2,554,324	28.97	4.70
경남	3,251,158	23.99	3.08
제주	675,252	90.34	31.10
총계	51,325,329	17.85	5.61
수도권	26,014,265	11.34	4.23
지방	25,311,064	24.53	7.03

자료: 202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개정안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및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되어야 한다

는 의무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향유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정의견이 제시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방 분관을 설립할 때에는 지역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입지, 지역의 문화권, 유물 및 전문인력 보유 현황, 경제적 타당성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권역별 균형 설립이 박물관·미술관 설립의 여건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의무규정을 노력 규정으로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박정하 소위원장)

원안가결

6. 심사결과

원안의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설립과 운영) ① ~ ③ (생 략)	제10조(설립과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다. <u><후단 신설></u>	④ ----- ----- ----- ----- ----- ----- ----- ----- ---. <u>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